

-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안 자 : 송도호 의원 외 9명

나. 의안번호 : 제1264호

다. 제출일자 : 2020. 2. 4.

라. 회부일자 : 2020. 2. 12.

2. 제안사유

-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교육시설의 주(主)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있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 중임.
- 그러나 관련 법령에 의해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에 정차나 주차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 이에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에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임.

3. 주요내용

가.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(主) 출입문 주변 정차 및 주차 금지를 규정함(안 제7조의2제1항)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0. 2. 17. ~ 2020. 2. 24.

○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) : 수정가결

○ 법률자문 결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볼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·정차 금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고,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서 주·정차 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‘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’에 대하여 추가로 주·정차 금지 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교육시설의 주(主) 출입문 주변에서 주정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장소¹⁾에 “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(主) 출입문 주변”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본래 기능과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- 현행 「도로교통법」 (이하 “법”) 제12조²⁾에서는 시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서울시는 이에 따라 초등학교, 유치원, 특수학교, 어린이집 · 학원(100인 이상)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³⁾을 추진하고 있음

1)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

2)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.

3) ‘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’ 1.사업기간: 2020. 1~12월 2. 예산액: 35,392백만원(국비 12,636/ 시비 22,756)
3. 사업내용: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· 정비(92개소),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(114개소), 초등학교 주변
과속단속카메라설치(300대) 4. 지정절차: 신청(시설의 장)→현장조사(구청장)→경찰청 협의→지정(시장)

〈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〉

(‘19. 12월말 기준)

구 분	계	초등학교	유치원	특수학교	어린이집 (100인 이상)	외국인학교	학원 (100인 이상)
지정현황	1,760	605	612	24	506	10	3

- 또한, 서울시는 ‘2020년도 주·정차 단속 등 종합계획’⁴⁾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·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,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‘시민신고제’⁵⁾의 신고항목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·정차 단속 건수는 2015년 99,976건에서 2019년 156,6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

〈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〉

(단위 : 건)

구 분	연간 평균	‘19	‘18	‘17	‘16	‘15
합 계	119,750	156,639	120,788	115,015	106,329	99,976
서울시	2,514	5,936	2,209	2,107	1,802	516
자치구	117,236	150,703	118,579	112,908	104,527	99,460

4) ‘2020년도 주·정차 단속 등 종합계획’ : 교통지도과-4160

5) ‘시민신고제’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로 주로 신고 대상은 서울시내 전역의 ▲소화전 ▲소방차 통행로(소방활동장애지역) ▲보도 ▲횡단보도 ▲교차로 ▲버스정류소 등 6개 지점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. 6대 지점은 ‘도로교통법’에 따라 비워둬야 하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

-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·정차 증가는 차량 흐름 등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'16년~'18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평균 84건에 육박하고 있음

〈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〉

구 분	합계	차대사람						차대차
		소계	횡단 중	차도 통행 중	길가장자리 구역통행 중	보도 통행 중	기타	
'16년	발생(건)	96	78	50	7	4	3	14 18
	사망(인)	2	2	0	1	1	0	0 0
	부상(인)	101	80	53	6	4	3	14 21
'17년	발생(건)	81	62	45	3	1	1	12 19
	사망(인)	1	1	1	0	0	0	0 0
	부상(인)	85	64	46	3	1	1	13 21
'18년	발생(건)	77	70	43	7	2	4	14 7
	사망(인)	1	1	0	1	0	0	0 0
	부상(인)	76	69	43	6	2	4	14 7

- 따라서,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(主) 출입구 주변을 주정차 금지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- 다만,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나 법 제32조⁶⁾에서 정하고 있는 주·정차 금지 장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

6) 「도로교통법」 제32조(정차 및 주차의 금지)

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교차로 · 횡단보도 ·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(「주차장법」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)
2.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3.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
4.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(停留地)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

내 교육시설의 주(主) 출입문 주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

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제2호⁷⁾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안이 관련법 위배 소지도 있는 바,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

이내인 곳. 다만,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
6.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
 - 가. 「소방기본법」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
 - 나.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
7.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
7)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9조(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)

-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·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 1. 차마(車馬)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
 2.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
 3.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
 4. 이면도로(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)를 일방통행로로 정·운영하는 것